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안내

1. 실습지원비란 무엇인가요?

- 실습지원비란, 귀사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
-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가능
- 안내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최저임금(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 설명

2. 실습지원비는 얼마부터 지급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급 비율	[주 48시간 × 1개월] 기준 총액	[주 48시간 × 2개월] 기준 총액
100% 지급	2,236,300원	4,472,600원
75% 지급	1,677,225원	3,354,450원

* 주휴수당 포함(2027년 기준 최저시급 10,700원 적용)

- **최저임금의 100% 지급시 안내사항**

- 실습기관(기업)이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대학에서는 귀 실습 기관(기업)에 **최저임금액의 25%**를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금 예시(2027년 기준)

항목	실습기간	계산식
실습생 1인 기준	1개월(4주 이상)	2027년 월 최저임금 = 2,236,300원
	2개월(8주 이상)	월 최저임금 2,236,300원 × 2개월 = 4,472,600원
환급금액	1개월(4주 이상)	1개월 최저임금액의 25% = 559,075원/인
	2개월(8주 이상)	2개월 최저임금액의 25% = 1,118,150원/인

※ 단, 연장 근무 수당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는 협약서 체결시 확정됨

3. 마지막 주에 2~3일만 실습하는 경우는요?

- 해당 주의 실습지원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주간 실습지원비 ÷ 5일 × 남은 일수

4. 실습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 연장 근무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 학교와 학생 동의하에 **주 5시간 이내**만 가능하며, 아래 기준으로 계산
연장 시급 = 10,320원 × 1.5 × 연장 시간

5. 지급 방식 및 주의사항

-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통장으로 지급해 주셔야 하며, 금액은 기업이 학교에 제출한 협약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실습지원비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실습생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기업 등에서 실습을 수행하며 받는 금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2) 교육부 공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관련 교육부 공문 (2022.2.7.)

‘실습지원비는 비과세 처리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서명: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

실습지원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공제 없이 **전액**을 학생 통장에 **지급**해야 합니다.